

장성군 주민건강 증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「장성군 주민건강 증진 등에 관한 조례」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지방자치법」 제66조의2 및 「장성군의회 회의 규칙」 제20조의5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2017년 11월 16일

장 성 군 의 회 의 장

1. 조례명 : 장성군 주민건강 증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2. 제안이유

- 상당수의 비장애 어르신들이 청력감퇴나 노안으로 인한 시력저하에 고통을 받고 있어 노인성 난청 및 안 질환자들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강관리 및 보장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정의 조항 신설(안 제2조 제2항)
 - (신설) 노인성 난청 및 노인 안 질환 관리에 관한 사업
- 사업내용 조항 신설(안 제4조 제5항)
 - (신설) 노인성 난청자와 노인 안 질환자의 건강관리 및 보장구 지원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노인복지법 제4조1항

5. 공고기간

- 공고기간 : 2017. 11. 16. ~ 2017. 11. 20.(5일간)
- 공고장소 : 장성군의회 홈페이지 게시판(공지사항)

6. 조례안 : 붙임

7. 의견 제출

-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20일 18: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장성군의회의회장(참조 의회사무과장)에게 방문, 우편 및 팩스를 통하여 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- 성명, 주소, 연락처(법인·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
- 기타 사항은 장성군의회 의회사무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 - ※ 우 57219 전남 장성군 장성읍 영천로 200 의회사무과
 - 받는 사람 : 장성군의회의회장(참조 의회사무과장)
 - 전화 061)390-7504, 팩스 061)390-7595

장성군 군민건강 증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군민에게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도록 건강에 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“군민”이라 함은 장성군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을 말한다.
2. “건강증진사업”이란 「국민건강증진법」 제2조와 관련하여 장성군보건소(이하“보건소”라 한다)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.
 - 가. 절주, 비만, 영양개선, 신체활동과 구강건강, 금연서비스 등에 관한 사업
 - 나. 모자보건, 치매, 정신보건, 장애인재활사업, 아토피·천식, 암관리, 한의약, 방문건강관리 등 각종 보건사업
 - 다. 노인성 난청 및 노인 안 질환에 관한 사업
 - 라. 그 밖에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군민건강증진을 위한 사무를 포함한다.

제3조(군수의 책무) 장성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는 군민이 신체적, 정신적, 사회적으로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·단기 정책을 수립하여, 군민건강증진 사업을 수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4조(사업내용) 군민건강증진 사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.

1. 건강증진사업에 관한 프로그램 운영
2.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
3. 경로당 및 시설이용 군민 건강관리 및 교육
4. 의료기관 및 복지기관과의 프로그램 공유
5. 노인성 난청 및 노인 안 질환에 따른 건강관리 및 보장구 지원관리
6. 그 밖에 군수가 필요로 하는 사업

제5조(건강증진사업 등 실시) ① 군수는 모든 군민이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제4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그 대상이 되는 개인 또는 집단의 특성 등을 파악하여 적절한 건강증진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및 실시할 수 있다.

② 건강증진사업 중 보건관련 행사 유공자, 금연성공자 등 사업 확산을 위해 실시한

행사나 대회에서 선발된 자에게 표창할 수 있다.

제6조(강사의 위촉 등) ① 군수는 건강증진사업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전문강사를 위촉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강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.

1. 대학 및 연구기관 전문가
2. 해당 분야 전문자격증을 가진 자
3. 그 밖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

③ 군수는 위촉된 강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7조(그 밖의 지원) 군수는 건강증진사업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관용차량을 지원할 수 있다.

제8조(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